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4. 22 선고 2020가단91475 판결 [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5. 19 선고 2021나208605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4. 22 선고 2020가단91475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현선철

변론 종결 2021. 3. 25

판결 선고 2021. 4. 22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고양시 덕양구 C 도로 43㎡ 에 관하여,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6. 7. 8. 체결된매매 계약을 취소하고,피고는 D 주식 회사에게 의 정부지방법 원 고양지 원 2016. 7. 12.접수제97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D 주식회사·(이하 '이'이라고 한다)는 1998. 12. 4.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가 고양 시 덕양구 E 전 720㎡가 잔여재산으로 발견됨에 따라, 2012. 1. 31.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잔여재산을 처리한 후 해산하기로 하면서 2012. 2. 1.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여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고 2012. 2. 2. 청산인으로 F를 선임하였다.

나. 그런데, D 명의의 또 다른 잔여재산인 고양시 덕양구 C 도로 43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가 발견되었는데,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7. 8. 피고(F의 자녀)와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한 뒤 2016. 7. 12.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다. 한편,원고는 F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6289, 2007나8864 판결 등 에 기초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,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F가 D에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고,특별현금화 매각명령을 거쳐2019. 12. 30. 주식매각기일에서 D의 보통주 6,000주(전체 주식의 30%)를 매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취지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D의 주주로서 D에 대하여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D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

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회사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자에게우선 변제를 한 뒤 남은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한다(상법 538조).

그런데,원고가 뒤늦게 주식을 취득하여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D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그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,그 주식 취득 이전에D이 한 법률행위까지 취소하여 그 잔여재산을 증가시킬 것을 구할 수는 없다.

따라서, 원고의 주식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,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균철